# 2020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최종 보고서

2020. 10.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

## 목 차

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소개	3
1.	2019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요	5
2.	준비 과정	6 7
3.	프로그램	11
4.	워크샵 세부내용	13
5.	행사 평가1) 참석자 통계2) 각 세션별 보고서 요약본3)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43 43
6.	결산	51
7.	사진	52

## 0.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소개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자간(multi-stakeholder)의 정책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포럼입니다.

지난 2005년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 문서인 튀니스어젠더(Tunis Agenda)의 72항에 따라 2006년 아테네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이후 개최 국가를 달리하며 매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IGF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인터넷 관련 이슈들이 제기되며, 개발도상국이나 새로운 참여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IGF는 단순히 정책토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터넷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해 '권고' 등 보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할 것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23~24일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넷문디알(NetMundial) 회의(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서도 IGF의 강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은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주요 주요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태지역 IGF 및 세계 IGF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의 이해당사자들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2012년부터 매해 개최되어 왔으며 2020년에 9회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다자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행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세계 IGF에 국가인터넷거버넌스포럼(National IGF)으로 공식 등록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지난해에이어 최종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를 세계 IGF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KIGA 사무국

(Tel. 02-3446-5934, E-mail. sec@kiga.or.kr)

## 1. 2020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개요

o 주 제 :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o 일 시 : 2020년 8월 21일(금), 10:00~18:00

o 장소: Zoom 온라인 회의

o 주 최 :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 o 주 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 GiGA Genie,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 GP3 Korea, 가비아, 미래인터넷포럼(FIF),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단법인 오픈넷, 카카오,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무법인(유) 한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총 14개 기관)
- o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 네이버, 가비아, KT GiGA Genie (총 5개 기관)
- o 홈페이지 : www.krigf.kr
- o 참석인원 : 총 188명(줌 참석자 119명(63%), 유튜브 시청 69명(37%))
  - \* 줌 참석자에는 패널도 포함 되어 있음(약 50명)

## o 주요결과

-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 연결, Youth 세 가지 주제의 9개 워크샵, 주소자원분과 공개회의, DNS 튜토리얼, A.I.(인공지능) 관련 강좌 진행
- 특히 COVID 19, 망 중립성 등 언택트 시대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워크샵이 진행되었음.
- Youth 주도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주제 세션이 개최되는 등 Youth의 워크샵 제안 신청이 이루어짐.
- KrIGF 영상 품질 제고 및 문자 통역 제공을 통해 KrIGF 접근성 개선
- 행사 전후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유튜브 채널 도메인 활성화(krigf-channel.kr), 유튜브 채널을 통한 행사 동영상의 아카 이브 등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영상 체계화

## 2. 준비 과정

## 1) 프로그램위원회

- o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산하의 워킹그룹인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프로그램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회는 정부, 업계, 학계, 기술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들로 구성됩니다.
- o 2020년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 오병일(위원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 김태은(위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부
  - 박지환, 오픈넷, 시민사회
  - 오경미, 오픈넷, 시민사회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시민사회
  - 이동만, KAIST, 학계
  - 최은창, Free Internet Project, 학계
  - 김경석, 부산대학교, 학계
  - 손재원, UNDP, Youth
  - 나황영, 법무법인(유한) 바른, 법조계
  - 최은필, 카카오, 산업계
  - 이상협, 네이버, 산업계
  - 정지영, KT, 산업계
  -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업계
  - 박복남, 핸디소프트, 산업계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부
  - 김보영,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

## 2) 프로그램위원회의 준비 과정

- o 2020년에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갖고 행사 준비를 논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별첨 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o 1월 31일 : 2020년 프로그램위원회 1차 회의 (제41차 회의)
  - 2020년 KrIGF 프로그램위원회 위원 신청현황 점검 및 위원장 선정
  - 2020년도 KrIGF 위원별 역할(조직위원회) 논의 정리
  - 2020년 KrIGF 장소 및 날짜 논의
- o 5월 22일 : 프로그램위원회 2차 회의 (제42차 회의)
  - 2020 KrIGF 프로그램위원회 모집 현황 공유
  - 2020 KrIGF 일정 변경 및 장소 논의
  - 2020 KrIGF 개최 계획 수립(역할, 일정 등)
  - 2020 KrIGF 주제 및 슬로건, 워크샵 주제 논의(온라인 조사 결과 참고)
  - ☞ (6안) 팬데믹 시대의 인터넷 거버넌스 : 뉴노멀, 연결, 안전
- o 6월 26일 : 프로그램위원회 3차 회의 (제43차 회의)
  - 2020 KrIGF 프로그램 논의(신청 현황, 평가위원회 구성, 기획세션 논의)
  - 2020 KrIGF 온라인 개최 방식 및 장소 논의
  - ☞ Zoom을 통한 온라인 개최 확정
  - 2020 KrIGF 공동주관 및 후원사 모집
  - 2020 KrIGF 서포터즈 운영방안 논의 : 전국적으로 홍보
- o 6월 8일~7월 12일 : 워크샵 공모 기간
- o 7월 14일~16일 : 제안된 워크샵 평가
- o 7월 17일 : 프로그램위원회 4차 회의 (제44차 회의)
  - 2020 KrIGF 프로그램 논의(모집현황 및 평가결과 공유, 프로그램 구성 등)

- ▶ 총 12개의 워크샵 및 튜토리얼 제안(워크샵 10개, 튜토리얼 2개)
- 2020 KrIGF 프로그램 조정
- o 7월 31일 : 프로그램위원회 5차 회의 (제44차 회의)
  - 2020 KrIGF 프로그램 논의(제안서 및 패널 업데이트 현황 공유 등)
  - 2020 KrIGF 개회식 및 축사 논의
- o 8월 21일 : 행사 개최
- o 10월 30일 : 프로그램위원회 6차 회의 (제45차 회의)
  - 2020 KrIGF 결과 보고
  - 행사 평가
  - 2020 KrIGF 최종 보고서 논의
  - 2020 KrIGF 개선 방안 논의

## 3) 사무국

- o 2020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 정길원,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박은하,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김학진,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서 윤, 정보보안국제협력센터(KOICS)

## o (서포터즈)

- 경수정, 국립안동대학교
- 김민지, 중앙대학교
- 김아롬, 목포대학교
- 김이준, 경희대학교
- 김지미, 연세대학교
- 김한비, 숙명여자대학교
- 김혜진, 이화여자대학교
- 나소담, 건국대학교
- 문필섭, 서울시립대학교
- 박민혁, 연세대학교
- 송민석, 숭실대학교
- 송의석, 고려대학교
- 임가영, 이화여자대학교
- 정몽환, 부경대학교
- 조승연, 연세대학교
- 조은성, 경기대학교

- 채진주, 조선대학교
- 최문식, 서강대학교
- 홍은별, 한국외국어대학교
- 황지현, 이화여자대학교

## 4) 페이스북 페이지

- o 기존에 페이스북 그룹이 존재하였으나 개인 계정으로 운영이 되었 기 때문에, KrIGF의 공식 계정을 통한 조직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였음
- o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rigf.kr/

## 5) 유튜브 채널 개설 및 KrIGF 동영상의 체계적인 관리

- o 과거에 촬영되었던 영상을 포함하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으며, 유튜브 채널 도메인 개설.
- o 유튜브 채널 : krigf-channel.kr

## 6) 문자통역

- o 장애인 접근권 보장 및 속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행사 현장에서 문자통역을 제공하기로 함.
- o 사회적 협동조합인 AUD(http://www.sharetyping.com/)의 문자통역 서비스 이용.

## 3. 프로그램

o 2020년 한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은 안전, 연결, Youth 등 3개 트랙으로 9개의 워크샵, 2개 강의 세션, 1개의 공개회의 형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트랙1	트랙2	트랙3					
	안전	연결	Youth					
시간	간 내용							
	개히시							

10:00 ~10:30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포스트 코로나19와 정보통치성 시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성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10:30 ~12:00 (90')	□ <b>사회</b> : 류승균(넷플릭스) □ <b>토론</b> 패널1. 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패널2. 검재환 국장(인터넷기업협의회) 패널3.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 패널4. 이욱재(코리아크래딧뷰로) 패널5.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 성민규(UNIST) □ 발표 - 박대민(MBN), 인공지능과 정보통치성 - 성민규(UNIST), 스마트시티, 데이터 사 유화, 변종 신자유주의 □ 토론 - 임종수(세종대) - 채영길(한국외대)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사회 : 김태은(KISDI) □ 발표 - 고은비(KIGYS) □ 토론 - 최은필(카카오) - 문수복(카이스트) - 변규홍(스켈터랩스) - 전유진(여성을위한열린기술랩)						
12:00 ~13:00		휴식(점심시간)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13:00 ~14:30 (90')	□ 기획 :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 :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 발제 :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 토론 - 이승현 이사장(비온뒤 무지개 재단) - 오영택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 - 왹비 활동가(주홍빛 연대 차차) - 양지혜 활동가(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 - 김이준 - 박경신(고려대학교) - 정미나(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사회 : 손재원(UNDP, KIGYS) □ 토론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박한희(동국대, KIGYS) - 이재영(동국대, KIGYS) - 고은비(이화여대, KIGYS) - 이지원(서울여대, KIGYS) - 이원상(조선대)						
14:30 ~14:40		휴식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튜토리얼 : AI윤리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조망	COVID 19 이후의 뉴노멀,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						
14:40 ~16:10 (90')	□ 사회 :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 토론 -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 검재환(한국인터넷기업협회)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 <b>발표 :</b> 최은창(프리인터넷프로젝트)	□ 사회 : 이재영(동국대 학생, KIGYS) □ 발제 : 박태근(충남대 학생, KIGYS) □ 토론 - 김조은(정보공개센터) - 김대원(카카오) -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 황선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장창기(서울과학기술대학교)						
16:10 ~16:20	휴식								

16:20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공중보건과 개인정보의 균형은?	튜토리얼 :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WHOIS 도메인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 KIGA 주소분과 공개회의
~17:50 (90')	□ 사회 : 최은창(프리인터넷프로젝트) □ 발제 : 최은창(프리인터넷프로젝트), 최수정(함부르크대) □ 토론 : 김희진(연세대), 우하린 (서울과학기술대), 김은수 (서울대학교) 최재우 (위어드섹터)	□ <b>발표</b> - 강상현(KISA) - 석원진(엔에스컨설팅)	□ <b>사회 :</b>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 <b>발제 :</b> KISA 인터넷주소정책팀

o 세부적인 논의 결과는 [4. 워크샵 세부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 워크샵 세부내용

세션명	워크샵1.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세선당	규정한『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일시	2020	).8.21.(금) 10:30~12:00	7	장소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	류승균 변호사		발제	김민정	
	패널	김보라미(경실련)		•	김재환(인터넷기업협의회, 국장)	
참석자		황창근(홍익대학교, 교수)			이욱재(코리아크래딧뷰로, 상무)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이한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호사모임)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	

#### [쟁점 1]

(황창근 교수)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대해 문헌 해석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산업적 활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입법 취지를 바탕으로 본다면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함이므로 산업적 연구를 포함하지 않으면 가명정보의 도입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를 현행법 내에서 산업적인 연구로 보는 것은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김보라미 변호사) 산업과 상업의 구분을 따지는 것은 쟁점이 아니다. 과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서 연구가 이루어질 경우 안전조치로써 가명조치를 사용하라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적 방법은 공인된 윤리적인 것을 포함해 언급하는 것이기에 윤리 기준을 갖추지 않은 연구는 아예 연구의 세계에 더 이상 편입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논의 세부 내용

(서채완 변호사) 과학적 연구가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도 포함한다고 가정했을 때 헌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된다. 민간기업에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한 연구라하면서 광범위하게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법이 예정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 목적이 행정이 되면 전면 배제되는 형태인데 영역별로 권리들을 일정 수준으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적 연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가명정보가 개인정보인 이상 1회성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또는 헌법성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1항을 따라 공익이 있어야 하는데, 영리 목적이라 해도 부분적으로 공익적인 연구도 과학적 연구에 공익성이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의 기본 원칙이 공익이라는 목적을 깔고시작하는 만큼 과학적 연구를 폭넓게 해석하고 과학적 연구 자체로 모든 가명정보를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보조치를 고지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구조는 문제될 수 있다.

(김재환 국장) 앞서 나온 이야기와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Q&A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 범위부분이 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 해석을 통해 제한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가명정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몸에 와닿았는데 이것에 오해로 인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새롭게 출범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구분을 짓고 정보를 전달하는 등 안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욱재 상무) 데이터 시대인 지금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개인과 연

결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활용을 유용하게 하지 않으면 산업적 측면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가명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가명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한 잣대로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어느 정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어잘못 활용했을 때 처벌이 너무 강해 산업계에서는 기업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로 활용을 주저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제한이 생기는 이유는 가명처리를 했기 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 어떤 가명처리된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고정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어 통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 [쟁점 2]

(황창근 교수) 제3의 결합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결합기관이 상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결합기관이 전문기관이어야 한다고 본다. 가명정보 결합으로 발생될수 있는 개인정보 재식별 등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다. 외부적 통제가 이루어질 때 더 통제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생각하며, 여러 법체계를 전제로 해당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문성이 있어야 신뢰성, 안전성, 안정성 또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지정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이 감독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통제에 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기에 자체적인 통제나 자율적인 통제보다는 제3의전문기관의 통제가 더 낫다.

(김보라미 변호사) 결합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2016년 이후 재식별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결합에 대한 문제를 인지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합된 정보에 개인정보 주체들이 접근할 수 없었으며, 어떤 회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통지되지 않았다. 개방성, 투명성, 참여성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기에 이런 점이 큰 문제이므로 이러한 점들이 법에 꼭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빨리 신용정보보호법 상의 결합 절차를 자신의 통제 아래 넣고 해결해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다음으로 우려되는 문제는 만약 무제한적 결합을 허용했을 때 결합이 쌍방 다음 3자, 4자, 5자 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과거에 정했던 계열사에서 정보를 함부로 결합하지 말라는 원칙 등이 형이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채완 변호사) 국가가 나서서 데이터 결합을 장려하는 형식의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것은 다소 어색하다. 지금 정책의 기조가 공적 개입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면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같은 부분을 더 세밀하게 감독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 가명정보와 가명정보를 결합한다고 가명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며 결합하면 할수록 그 식별성이 높아진다. 대기업 결합을 여러 번 돌려서 각각 산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식별가능성과 같은 것에 대해 분석했던 사례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에 방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리고 결합된데이터를 통해 나온 연구 결과를 기업 간 공유하는 것과 가명정보 그 자체를 반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덜 다루고 있다. 또한 결합은 언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 연구와 맞물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김재환 국장) 결합이 반복될수록 식별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사업

자 입장에서 보면 가명처리된 정보를 다시 개인화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이미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를 얻어 가명화 및 익명화 처리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 개인을 식별화하기 위한 처리를 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식별화를 의도할 거라는 시선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업자들이 결합 신청하는 것을 과학적 연구나 상업적 통계 작성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하는 만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책임관리가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결합기관이 많이지면 관리가 힘들 뿐만 아니라 결합기관 간에 정보 교류같은 부분에서 업무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에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용정보 관련해 결합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향후 민간기관에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는 법시행 이후 가명정보 결합의 이용과 결합 절차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민간에까지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해주실 거라 생각한다.

(이욱재 상무)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결합 활용 없이는 데이터 산업 시대에서 제약이 너 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 결합할수록 식별성이 커진다는 이슈가 있는데, 활용하거나 반출할 때 가명처리가 적절했는지 다시 확인하고 추가 가명처리를 하는 등의 확인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못 믿겠다 며 불법적인 경우를 전제로 처벌조항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산업계에서 데이터를 사 용하는데 더 소극적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고 활용 측면에서도 바라 봐주길 바란다. 신용정보법이 지정한 두 군데는 보안이 높고 금융감독원이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체계상 문제가 생겨 정보 누수가 발 생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출 관련 위험성을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알 지만 법체계상 반출할 때 가명처리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이를 기업으로 가져왔을 때 반출된 것과 기업의 원데이터에 대해 실제적으로 권한과 분리를 다르게 하면서 섞이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반출된 정보를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와 결합해 재식별하는 것을 우려하는데 이를 할 경우 매출액의 3% 인사처벌을 받으며, 소비자를 고객으로 모시는 비즈니스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더욱 주의할 것이다. 그래서 해 당 논의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하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족한 측면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쟁점 3]

(황창근 교수) 대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단일한 기관 내의 단일한 사람이지 않을 수 있는데, 영업이 분리되는 등의 경우처럼 가명정보가 제3자에 의해 결합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개정법의 취지라면 이러한 부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 법인이더라도 사업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결합과 반출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보이는 점에 대한 부분을 보완했으면 한다. 그리고 반출 심사기준을 통과한 이후에 대한 통제 절차 관련해 아무런 규정이없는데 법이 이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고시에서 통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김보라미 변호사) 가명정보라 해서 모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명처리에 대한 안전조치로써의 맥락이 좀 더 강조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나 설명으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파일링 보호장치로써 개인정보평가나 프로파일링 거부권, 트래킹 감시 등이 후속입법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부분에서 가명정보만 부각되는 것 같다. 이러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

려가 덜해질 것이며 그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이 클 것이다. 결합 관련해서 기업쪽에서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인권이고 기본법상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정보통제권의 전제 장치인 만큼 정보주체의 참여나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투명성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기업 쪽에서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십사 같이 읍소하면 좋을 것이다.

(서채완 변호사) 개인정보활용법이 아니라 보호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활용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 내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에 관해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리가 보장이 되고 정보주체가 여기에 동의할때 기업도 더 많은 협조를 얻어 사업적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 생각한다. 연구목적이나 정보주체의 권리, 프로파일링에 대응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입법보완 되어야한다.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라 해서 일반법에 단순하게 들어와 있어 가명처리가 됐을때 위험성이 있는 정보, 즉 식별 가능성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장치가 제대로 안됐을때 치명적일 수 있는 민감정보 등이 가명정보에 해당하기만 하면 다 사용할 수있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특히 식별가능성의 문제가 생기면 이부분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 책임소재가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향후고민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단계 내에서 권리들이 잘 보장되어야한다.

(김재환 국장) 개인정보 가명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 하나씩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견을 드리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더 보장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주체의 권리가 강화되고 가명처리가 어떻게 되어 개인정보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알려면 정보주체가 본인이동의한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동의제도는 실질적으로 너무 형이화되지 않았나 우려된다. 향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논의할 때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것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도 같이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이욱재 상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서 관련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안전한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이 얻는 이득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데이터의 보안기술 중 개인의 식별성을 낮춰서 활용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킴으로써 강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투명성 관련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데이터를 연계·결합하는 것을 기업에서 하면 불안한 요소가 많아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결합해주면 이를 안전하게 쓰겠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보니 이러한 과정을 잘 관리한다면 투명성이 유지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한샘 과장) 위의 내용을 들었을 때 안전한 활용, 보호와 활용의 균형이 가장 중요한점으로 꼽히는 것 같은데 개정법의 첫걸음이다 보니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과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열린 자세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함으로써과제를 계속 보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세션명	워크샵2. 포스트 코로나19와 정보통치성 시대,							
세건경		그린뉴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성						
일시	2020	.8.21.(금) 10:00~12:00	7	장소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	성민규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발제	박대민(KDX데이터거래소 박사),			
	자외 경인파(출인파악기출현 파구) <b>출제</b>	성민규(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참석자	패널	임종수 (세종대 교수)			채영길 (한국외대 교수)			
		오병일(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음의 질문들을 중심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정보상품화에 따른 정치경제적 통치체제의 변환과 그에 따른 도시커뮤니케이션 정책으로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토론함.

- 국가 위기에서 전염병은 어떤 위기인가?
- 국가 위기에서 공공성과 전염병 위기에서 공공성은 어떻게 다른가?
-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데이터 활용과 사생활 이슈는 기존 "위기"의 정의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코로나19 위기"의 차별화된 특성들은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거버넌스를 요구하고 있는가?
-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자원인 "개인정보"와 "데이터" 그리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는 "포스트-코로나19 시대"의 거버넌스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면, 그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2019년 말 국회에서 통과된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공공성 담보를 위한 장치라고 홍보되는지만, 다른 한편으론 개인정보와 데이터의 기업주의적, 시장주의적 접근과 이용을 법으로써 보장해준다는 논쟁에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린뉴딜" 사업이 코로나19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는가?

## 논의 세부 내용

- 포스트-코로나19 시대는 디지털 미디어 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통치성과 금융 기반의 금융통치성 시대가 종식되고, IT기업과 인공지능 방법론에 전유되는 "정보통치성 시대"로 전환되었다. 요컨대, "정보통치성"과 "포스트-코로나19"의 연결 국면에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성은 어떻게 재정의되어야 하는가?
- 지난 "데이터3법" 통과 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포스트-코로나 19와 정보통치성 시대의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리더쉽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가? 위기 관리와 극복을 위해 별도의, 상시적인 거버넌스 제도 (가칭, "공공정보처리위원회")가 필요한가?

정보상품화는 거시적 맥락에서 통치체제의 변화로서 이해되어야 함. 데이터와 인터넷의 밴드와이드의 다양한 수량적 변환이 사회에서 개인삶으로 치환되

이 통치성 변화의 한 사례로서 '스마트시티'를 접근할 수 있음.

는 것을 통치성의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음.

특히 2020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데이터 이용 및 프라이버시권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이런 면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포스트-코로나19 정책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만

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아님.

스마트 시티 정책은 민간참여를 강조하지만, '리빙랩'의 많은 서구 사례 연구에서도 입증되듯이, 리빙랩을 통한 스마트 시티가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지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음. 현재의 거대 기업주의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은 거대 자본의힘을 강화하고 산업과 행정의 중앙집권화 및 감시체제의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세셔명	워크샵3.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AI L 0	방안						
일시	2020	2020.8.21.(금) 10:30~12:00		20.8.21.(금) 10:30~12:00 <b>장소</b> 온라인 포럼 개최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	김태은 (KISDI)		발제	고은비(KIGYS), 정지원(KIGYS)		
차서다		최은필(카카오)			변규홍(스켈터랩스)		
잠석자	패널	문수복(카이스트)			전유진(여성을위한열린기술랩)		

인터넷 거버넌스 내 컴퓨터 공학 분야의 여성 기술자 참여가 부족한 원인과 장애요인을 짚고, 참여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하였다.

-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기술자 성비가 낮은 현 상황
- 여성의 기술적 장벽 문제
- 이를 위한 해결 방안 : 초중고 파이프라인을 고려해 청소년기부터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커뮤니티의 필요성,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형성, 제도적 장치

인터넷 거버넌스에 여성의 참여가 부족한 이유와 더불어 여성 기술자의 양성에 관해 논의하였다.

먼저 인터넷 거버넌스는 성별을 떠나 ICT 기술자들의 참여가 어려우며 뚜렷한 동기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거버넌스적 참여가 자신의 권리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여성 기술자의 수적 증대를 위해 여성의 기술적 접근성을 위한 커뮤니티가 중요하며 기술 분야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더욱 세부적으로 진단해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초중고파이프라인을 고려하여 즉 중학교 때부터 여성의 기술적 친밀도를 높여야 한다. 제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기술친화적 분위기 형성도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 기술자 양성을 위해 제도로 여성의 비율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자발적으로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 논의 세부 내용

세션명	워크샵4.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일시	2020.8.21.(금) 13:00~14:30		7	당소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	미루(진보네트워크센터)		발제	오경미(사단법인 오픈넷)	
참석자	패널	이승현 (비온뒤 무지개 재단 이사장)		사장)	오영택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 기획단 사무관)	
		왹비 (주홍빛 연대 차차 활동가)		·)		

- 여성의 성적 대상화에 대해 대항에 왔던 방법들이 오히려 오늘날 다른 소수자를 배 제하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현실을 짚은 여는 말로 논의를 시작
- 현재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여성청소년이 마주한 혐오와 배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 트랜스젠더의 경우 비가시화된 존재로서 성소수자로 뭉쳐져 이야기 되어왔을 뿐 제대로 이야기 된 적이 없었다. 그러다 조금씩 트랜스젠더의 이야기, 성소수자 내에서도 다양한 존재들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했지만, 트랜스젠더에대한 혐오는 심화되고 있다. 복합적인 맥락에서 혐오가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트랜스젠더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 성노동자에 대한 모순된 시선이 존재한다. 여성운동가들은 성매매 철폐를 외치며 이를 성착취라고만 이야기 하고 성노동자들의 운동을 폄하하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성 노동자의 현실이나 당사자들의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
- 여성 청소년들뿐 아니라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시선. 그러면서도 여성청소년들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 어리고 순결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N번방사건 일탈계에서 나타난 문제는 이런 사회적 구조와도 연결되어 있음.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의 성적 쾌락과 성담론을 문란한 것으로 치부하고 규제하려고만 할수록 이것이 일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됨.

## 논의 세부 내용

- 국가인권위에서도 혐오차별에 대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임. 진정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지정되어야 하는데 혐오차별 표현은 하나의 집단 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건 처리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혐오차별 대응기획단도 만 들고 혐오표현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안전 담론 그 이후를 위해 우리는 무 엇을 해야 하는가
- 누가 '연대'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이는 마치 파이싸움 처럼 누가 더 많은 파이를 가질것이고 누가 파이를 가질 자격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같다. 모두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고 사회구조적 문제, 개인의 관계망 등 여 러 원인으로 성노동자가 되곤한다. 이런 사회구조적 논의 없이 똑같은 자리에 선 사 람들만 이야기 할 수 있는게 자격이라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기득권과 다를바 없다. 따라서 우리는 더 많이 배제된 사람들, 주변화된 존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이 오히려 청소년을 규제하는 것으로만 작용하고 정작 무엇이 유해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 성적 쾌락, 성담론을 일탈적으로밖에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따라서, 일 상적인 감각으로서의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고 금지하는 것이 안전을만들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 - 20 -

- 안전에 대한 요구는 사실 공포로부터 기인한다. 대상을 단순화하고 맥락에서 제거시켜 박제된 이미지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혐오와 차별, 배제가 작동하게만든다. 단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접점을 만들어 소수자간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지금의 혐오 표현 규제들은 맥락과 역사적인 고려 없이 단순히 거친 표현, 욕설 등을 주로 규제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무엇이 혐오표현이고 어 떤 것이 차별의 맥락을 담고 있는 것인지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인터넷 포털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세션명	워크	워크샵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일시	2020	020.8.21.(금) 00:00~00:00		장소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	오병일		발제	X	
참석자	ᆒ너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실장)		장)	신용우(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패널	박경신(고려대학교 교수)			김이준(경희대학교)	

서론: Webtoon by 서창휘, 헤니히

인터넷의 정보전달 원리를 간략히 표현한 웹툰입니다.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각 단말(라우터)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에게만 정보를 전달한다. 즉 모든 라우터들은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라우터에게 한 칸씩만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고, 이는 모든 라우터들이 정보전달에 기여하는 셈이 되므로 이 '전달'에 대해서는 서로 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인터넷의 구동 원리인 '망중립성'이다.

토론1: 국내CP와 해외CP간 망사용료 납부에 있어 역차별이 있는가.

해외CP들이 망사용료 납부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매번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국내 망 사용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매번 체감하고 있다. 콘텐츠의 경쟁력 없이 망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없다. 망사 업자는 본연의 입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 논의 세부 내용

특정 CP의 컨텐츠가 망을 통과한다고 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컨텐츠 사업자(ex 유튜브, 넷플릭스)가 데이터 용량에 비례하여 요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용량의 컨텐츠를 전송하면 많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 별 상관이 없다.

현실적으로 캐시 서버 없이는 해외CP들이 국내에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망사용료 지불 대신 캐시서버 설치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ISP들과 해외CP들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볼 수도 있다.

토론2: 국내 통신망의 접속료는 적절한 수준인가.

인터넷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스마트폰 같은 단말기 구입 시 상당한 지원 금을 받으며, 망사업자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동원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게 가능한 것은, 망사업자들이 충분한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스타트업들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망사용료와 관련한 계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 상호접속고시에 일부 무정산 구간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파급력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아마존클라우드를 사용하고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국내 ISP들과 계약을 하고 요금을 지불한다. 이러한 요금역시 스타트업과의 계약에 반영이 될 텐에 이런 세부적인 요금들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 모든 요금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일부 자료라도 공개가되면 요금 산정에 대한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망사용료는 OECD국가 중 압도적으로 비싸다. 하지만, 데이터가 인터넷선을 통과 하면서 발생시키는 비용은 없다. 비싼 요금은 '발신자 종량제' 때문이며 국내 ISP들이 캐시서버를 도입하는 것도 상위 망사업자에 납부해야 할 망사용료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망사업자는 해외CP에 대해 협상력 자체가 없다.

협상력이 작은 중소CP입장에서는 망사용료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 ISP에 간곡히 부탁해서 협상을 하는데, 이 가격정보를 공개해버리면 많은 공을 들인 협상으로 합의된 가격을 노출해야 하는 것이기에 공개가 어렵다.

토론3: 현행 상호접속고시에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

초기 상호접속고시 도입의 취지는 대형 망사업자와 중소 망사업자 사이에서 불합리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상호접속고시는 2016년 이전부터 존재해 온 규정이고, 2016년부터 시행된 것은 발신자 종량제이다. 발신사 종량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1.8:1)이라는 무정산 구간도 접속 용량에 비례하는 것이지 발신자 종량제 같은 데이터 전달료 개념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다. 즉 (1.8:1)의 무정산 구간을 두어도 변하는 것은 없다. 발신자 종량제로 인해 각 ISP들은 1.8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킬러콘텐츠를 기피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발신자 종량제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폐지한 후에, 시장을 확인한 뒤 시장지배력 남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경쟁법을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토론4 :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5G환경의 관리형 서비스에 대하여 망중립성의 예외를 적용해야 하는가.

현행 최선형 인터넷망으로 제공하는 게 어려운 서비스에 한해서 망중립성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의료, 자율주행이라고 해도 무조건 생명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관리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해도 일반 인터넷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이는 유럽의 관리형 서비스 제공 요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세션명	워크샵6.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19 사태의					
세선정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	2020.8.21.(금) 13:00~14:30		<b>장소</b>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	손재원(UNDP, KIGYS)		발제	고은비, 이지원, 이재영	
참석자	ᆒᅜ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박한희(희망법)	
	패널	이원상(조선대)			고은비(이화여대, KIGYS)	

#### 1번 쟁점

- 확진자 대상 사이버 불링, 신상 털기, 악플 등이 문제 되고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가 역학조사관의 자의에 의존함
- 질본중심의 데이터 공개와 정보공개를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함
- 성 소수자 인권 등 2차적 피해에 대한 고민 없는 정보공개가 문제

#### 2번 쟁점

- 정보공개라는 기본권 침해에 있어 사회가 무감각하고, 행정 명령 등에 의존하는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정보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특히 공익과 사익의 비교에 있어서 공익 쪽에 초점이 있는 듯함)
- 확진자 정보 전면 삭제는 인터넷상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게 수집하고 적게 공개해야 함

#### 3번 쟁점

## 논의 세부

내용

- 정보공개가 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 보호조치는 나오기 어려우므로, 애도와 위로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최선일 듯함
- 정보 삭제를 하는 인터넷 방역단 등이 있지만 많이 더딘 편임
- 정보 파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법문상 성문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적 대처뿐만이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보임

#### 질문 및 정리

- Q. 정보 공개식 방역은 정부 능력 차이인가 공익과 사익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인가? A. 기본권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 뿐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다
- 방역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친인권적인 방역시스템이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지원 패널: 쟁점 1의 개괄적인 설명을 위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정보공개 범위를 소개하고 이태원 확진자의 경우를 예시를 들어 정보공개범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인 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희우 활동가 : 쟁점 1에 관하여 공중보건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개인정보 처리 권한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정도에도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선이 있음을 꼬집었다. 특히 이미

연관되어있는 공공기관, 사기업, 개인정보가 많은 현 역학조사 자동화 시스템이 더 고 도화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회관계, 사생활이 더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음을 말했다. 이에 관해 질병관리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정적일 수 있음을 알렸다. 무엇보다도 시스템 내에 권한 남용,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독 립적인 감독기관이나 시스템의 부재가 문제임을 말했다.

이원상 교수: 쟁점 2에 관하여 독일의 방역시스템 내의 기본권 침해를 예시로 들며 현재 한국의 방역에 관련한 법률규제는 비례성의 원칙을 따르지 못하고 있고 쉽게 공인되지 않은 법률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낮은 단계의 법률을 만듦으로써 기본권 침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고 본래의 목적인 감염예방이 아닌 시민들의 행동 제한에 초점을 두어 규제의 목적성을 잃었음을 암시했다.

박한희 변호사 :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는 성 소수자에게 더욱 문제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개인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선 공개에서 차별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지침이 개정되어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권고했지만 강제적인권한이 없어 각 지자체의 공개범위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또한 기지국 수사는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있지 않으며 연락처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하는 정보, 즉 신상을수집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보공개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현 정부는 공개하고 있지만, 과도 하다고 할 수 있다.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어떠한 조치가 방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개인에 대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해야 할 것과 공개해야 할 것을 명확히 분리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재영 패널 : 독일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에서 공익이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높아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행정명령 또는 지침을 공익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에게 이러한 방역조치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등에 관련해 설득이 부족해 보였다. 또한 수집된정보, 또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처리, 삭제 또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은비 패널 : 수집되고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관리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으며 정보에 대한 가치와 인식도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할 수 있는 혐오를 받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유연한 정책 적용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이중 보호 장치도 필요할 것 같다.

세션명		워크샵 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2020.8.21.(금) 14:40~16:10 <b>장소</b>		장소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	윤복남(법무법인 한결)		발제	없음(자유토론 형식)		
참석자	패널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 ¬^		<b>널</b>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중앙행정기 관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기존에 개인정보 감독 권한을 갖고있던 소관부처와는 물론, 다른 개별법과도 권한 및 감독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출범한 개보위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개보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각 패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개보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심우민 박사와 고환경 변호사 등은 아직도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일관성 있게 조정하는 것을 꼽았다. 김재환 실장도 통합 개인정보위원회로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조율할 것과, 새로 도입된 가명정보 등에 대해 국민에게 잘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우민 박사는 통합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보호법으로 분산돼 금융위원회쪽으로 가 있는 권한을 사전 조율하는 등 법 집행과 관련해 다른 파트들과 조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환경 변호사도 개인인정보 특별 법령에 대한 일관된 해석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보위가 보호와 이용의 균형점을 잘 설정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논의 세부 내용

이어 장여경 이사는 국제사회에서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독립적으로 정보주체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을 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제대로 구제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지연 사무총장도 새로운 개보위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개보위의 업무범위가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소비자의 목소리도 잘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위원회라고 명칭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재환 실장은 올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정말 가명정보를 활용해 통계 작성이나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의견 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개보위에서 고시나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 안전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환경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체제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고, 과징금 규제 역시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의 등 사전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여경 이사는 정보주체의 입장에서는 현재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처방전을 가명화해서 국외에 판매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와 홈플 러스가 고객정보를 판매한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판 매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보주체에게 잘 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정보주체가 제대 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제 대로 이루어져야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데이터 산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 총장 역시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은 활용도 안 되면서 보호도 안 됐다며 동의제도 개선도 필요함은 물론 기업들이 신기술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데에 대해 개보위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적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심우민 박사도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모든 것을 규율할 수 없다면 개보위가 유연하게 해석하고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개보위의 독립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민주 사무관은 탄력적인 해석으로 신기술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다음으로 개보위와 정부의 데이터 정책과의 관계맺음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장여경 이사는 개보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피규제기관 및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특히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독립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보법 하위법령 제정 과정과 관련해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정부가 밀리는 모습이 보였다고 지적하고, 기업이 셀프 결합을 허용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보위가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환경 변호사는 개보위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대립적인 관계로만 가기보다는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적절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심우민 박사는 공개성, 문서화된 공개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 박사는 유럽연합의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며 어떤 사업자가 무슨 의견을 줬고, 어떤 이용자는 이런 의견을 냈다 등등 어디서 온 의견인지를 다 공개하고, 취합해 결정하는 과정까지 개보위가전부 공개하는 것도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받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사회자인 윤복남 변호사가 개보위에서 활동했던 경험에 대해 거론하며 인터넷 거버넌스 원칙에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공개, 또 다른 하나가 참여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들은 의결기구로서의 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서의 위원회가 조화롭게 운영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정지연 사무총장이 개보위가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기구로 역할하며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을 수밖에 없는 정보주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접촉면을 넓히는 일을 해 주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고환경 변호사는 개보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 및 내부 사무처, 직원들의 역량을 확충하고, 기업책임성 강화 등의 추가적인 보완제도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은 세계적인 개인정보 보호의 시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김재환 실장이 유럽의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 들이는건 맞지 않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 후 플로어에서 장여경 이사에게 개보위 활동을 수행할 때 국내법으로 부족해 국제 조약을 활용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장 이사는 우리나라 개보법에는 '자동화된 처리'에 대한 아무 규범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규범이나 제도를 소개한 적은 있지만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민주 사무관이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 한 보호와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로 토론이 마무리됐다.

세션명	워크	샵8. COVID 19 이후의 -	<b>ᅼ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b>			
일시	2020	.8.21.(금) 14:40~16:10	징	<mark>}</mark> 소	온라인 포럼 개최	
참석자	사회	이재영		발제	박태근	
	패널	김조은(정보공개센터)			김대원(카카오)	
	<b>" = 1</b>	김철환(장애인권활동가)			황선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조발제

-코로나 19 이후로 언택트 문화가 발생하면서 우리 삶이 크게 변하였다.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진행되었고 회사에서는 화상회의 방식이 채택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과 계산을 하고 영화관 대신 유투브나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 이러한 비대면 사회가 구축되면서 전염 가능성이 줄어들고 스마트 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나 공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20,30대 같은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에는 매우 편리한 시스템이다.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불편함이 많다. 키오스크를 처음 이용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버튼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 스마트기기가 없어서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을 디지털격차, Digital Divide라고 한다. 초기의 디지털 격차는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접근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물리적 접근성으로 정의되었다. 하지만 최근 정의 되는 개념은 디지털 접근성에 다면성의 특징이 있다고 제안되면서 정신적 접근성, 물질적 접근성, 기술적 접근성, 사용접근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지고 단순한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활용 측면에서의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논의 세부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에 대해서 2002년부터 디지털정보 격차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가장 최신버전인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다.

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수준은 일반 국민의 약 70% 수준을 가진다고 나타난다. 세부적인 지표로는 접근, 역할, 활용 세 가지가 있는데 접근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유상태, 그리고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역량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60.2%, 활용은 컴퓨터 모바일 기기의 인터넷 양적, 질적 활용 정도는 측정하는 지표이고 68.8%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접근수준은 높은 편이지만 역량과 활용측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조사에서 취약계층을 크게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네 부분을 나누었다. 네 계층의 비자발적 인터넷 비이용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네 계층 모두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가장 큰 응답으로 나타났고 장애인 같은 경우 신체적 제약, 그리고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인터넷 이용요금이 부담스러워서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에 대한 대응으로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교육적 대응, 기술적 대응, 경제적 대응, 사회적 대응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쟁점 1. 언택트 문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정보의 가속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 장창기(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 박사과정을 하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온라인 참여, 디지털 정보격차,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한 내용 중 중증장애인, 1~3급까지의 장애인들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 접근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장애인의 정보격차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가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줄어드는 격차가 정말 향상되고 있는 모습인지에 중점을 두고연구를 진행했다.

실태조사에도 나와 있듯이 각종 지표와 정보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서의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장애인 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인식되던 장애 요인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 없이 활동하거나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연구결과요약에서 대체로 중증장애인들의 동기는 SNS서비스나 PC를 이용한 SNS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바일에서의 행정 서비스는 다소유예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 역량은 대체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기술적 역량이 증가할수록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단순한 기기 조작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어떤 전략적역량, 자기 목적에 맞는 어떤 관심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기술적 역량이 동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장애자체가 아닌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기기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이 해소 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인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알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쓰는 보조기기에 대한 숙련도 같은 분석이 더 존재해야 실질적인 장애인의 기술격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조은(정보공개센터) : 정보격차 문제에 대해서 불평등한 알 권리, 알 권리가 보장된 정도가 다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접근에 대해서 기본권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다. 사회적인 시점에서 공공기관에서, 공공서비스나 공공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이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이 혹시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 정보나 서비스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예로 공공도서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으면 도서관 이용을 하지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가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민간부분에서는 한국의웹 환경이웹 접근성이 좋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접근성 표준에 맞는 수어나 읽어주기기능이 빠져있고 모바일에서는 음성인식 기능이 미비하다. 언택트라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었지만 아직 활용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아닌데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본 값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해결 방안의 하나로서 제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김철환(장애인권활동가): 정보격차 문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잡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정보격차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강화되어도 진정한 격차가 줄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매개하는 역할,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도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원하는 콘텐츠들이 구비되지 않는 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정보격차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줄고 있고 대책이 세워지고 있다. 그 중 AI를 활용한 대

책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문제가 많다. 자막이나 수어통역, 화면해설 부분에 대한 Al활용 대안이 있지만 자막 같은 경우 보편화 되어 있지만 수어통역 같은 경우 아직 신뢰도가 떨어진다.

- 김대원(카카오) : 기업 입장에서 한국 케이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한국기업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덜 이루어지고 단순히 개념적인 비판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는 2018년 1월에 알고리즘 윤리를 처음으로 국내에서 발표했다. 이에 OECD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 고민하는 기구에 카카오가 초대되어서 활동하고 있다. 이로 기업 사이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주시면 될 것 같다.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설계 단계나기획 단계에서 디지털 포용과 관련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헌장을 추가하는 등 여러 노력과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카카오T같은 경우는 농아분들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목적지를 지정해 이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존재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웹접근성에 기반하여 폰트크기를 지원한다. 추가로 목소리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기업 입장에서 시도하고 있는 기능에 대한 생산적인 피드백을 주면 긍정적으로 반응 할 것이며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린다.

또한 기술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해야 한다, 정부가 행동해야한다 보다는 이런 것을 했을 때 기업이 더 많이 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본다. 기업이 스스로 뛰는 방향을 만들어서 억지스러운 포용보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포용이 될수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쟁점 2.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해 부족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는가?

- 황선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부에서 2020년 6월 20일 에 디지털포용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일상의 사소한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이었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비대면의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 이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써의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기존 정보격차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 던 정책들이 취약계층 위주이고 기본적인 인터넷 위주의 교육, 역략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 포용의 정의를 확장시켜서 기존 취약계층 위주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어떠한 배제 없이 사용하는 디지털 세상이라는 의도를 담았다. 기존에 정보격차 해소는 역량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것 두가지 에 크게 초점을 맞췄다면 디지털 포용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떠 한 기술이 활용되고, 또 시민사회와 기업과 정부가 다 같이 디지털 포용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것까지 시도하였다. 이번 정책의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개별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분들에 대한 교육진행, 취약계층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접근성 보장관점, 취약계층을 위한 기 술개발확산 및 기업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활동을 만드는 것 이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가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체가 다함께 고민하고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의 규제로 많은 효과를 이끌어 내는 것, 이슈를 계속 가져와서 긍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 김대원(카카오) : 정부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영 받을만 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가 '포용'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아젠다로 잡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만 정부가 제시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 같은경우는 정부차원 보다는 실제 시장내에서 구동시키는 기업이나 시민단체와 합심해야지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다. 기업 입장에서 디지털 포용정책에 적극적인 활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사회적인 활동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칭찬해주시고 또 그 방향성까지 제시해 준다면 선순환이 일어나서 정부의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 같다.
- 김철환(장애인권활동가) :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접근성의 역사성이 짧다. 해외와 달리 짧기 때문에 급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인 지침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있어서 동의는 하지만 비판적인 입장이다. 정보통신 관련된 접근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이 흩어진 부분이 있는데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망 관련해서 기술 내지는 관련 장비와 연동된 법률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공공측면에서 민간영역에서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공공지원에서 플랫폼을 만들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마냥 규제를 최소화해서 기업의 선행만 갖고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장애인,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의 접근성 확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오프라인의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정부부처간 협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 김조은(정보공개센터) : 기업에서 잘하고 있는 측면들도 인정하고 기술로 인해 더 많은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정책에서 조금 중요한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분서들이나 정부의 정보전달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 서비스 설계에 대해서 접근성에 대한 역량 평가, 디지털 정보접근에 대한 역량평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많은 힘을 쏟아주셨으면좋겠다.
- 장창기(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정부정책이나 기업이 추진하는 일이 시민에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되었다면 한편으로는 정부나 기업이 홍보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정부나 기업이 노력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가 쏟아지고 기술이 쏟아지면 오히려 정보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 정보 소외계층은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대학생, 중장년 모두가 될 수 있다. 정부측에서 정책을 진행할 때 가능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황선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받으니 와닿는 내용이 많다. 포용 추진계획은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여기에 주신 의견들을 덧붙여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 내적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생각 되는 것은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소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있다. 저희가 바라는 선순환은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편의를 느끼게 되고 나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는 분들이 생기고 또 그런 분들

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다 같이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항상 국민들에게 와 닿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조은(정보공개센터) : 디지털의 비자발적인 비이용자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이용하는 분들도 있다. 그런 분들도 정보 전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의 부분도 크게 고려해야 될 사안이다. 그래서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없애는 것도 일종의 차별이라고 생각되고 오프라인 서비스가 꼭 필요한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병행하면서 디지털포용정책을 추진하는 통로를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도 중요한 것 같다.

세션명	워크샵 9.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공중보건과 개인정보의 균형은?					
일시	2020.8.21.(금) 16:20~17:50		장소		온라인 포럼 개최	
참석자	사회	최은창 (프리인터넷프로젝.		발제	최은창(프리인터넷프로젝트,시민사회)	
	패널	최재우 (위어드섹터, 기술계)			김은수 (서울대 법과경제연구센터)	
		최수정 (독일 함부르크대, 이용자 )		<u></u> 왕자 )	우하린 (서울과학기술대, 학계)	

o 우리 방역당국은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공중보건 조치를 위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있음. 확진자의 접촉여부를 알 수 있는 앱이 구글, 애플 OS 기반으로 제작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만 특정 위치를 이탈하면 알려주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 사용되고 있음. 최근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 기점이 된 '광복절 집회' 참석자들을 찾는 데도 GPS가 활용되고 있음.

- o 정보수집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중앙집중형으로 모으느냐 분산형으로 처리하느냐 차이가 있음. 중앙정부가 개인정보 데이터를 저장해 관리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호주 등이며 중국 정부는 개인별 '건강코드'를 부여하여 '알리페이'나 메신저 '위챗'이 방역시스템과 연동되고 있어서 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함.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는 '분산형'이며 휴대전화의 블루투스가 익명화된 ID를 수집하는 방식임. 그러나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실제로는 앱 다운로드는 많지 않아 실효성이 없음.
- o 공중보건 목적에서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범위에 수집하고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국제적으로 벌어어지고 있음. 유럽 국가들은 프라이버시 의식이 강하고 일반데이터보호규제(GDPR)와 전자 프라이버시 지침(ePrivacy Directive)이 시행중이므로 정부가 개인정보를 과도한 범위에서 수집하거나 장기간 보유한다면 위법.

## 논의 세부 내용

- o 공중보건 목적에서 역학 데이터 수집의 불가피성도 존재. 보건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개인정보 수집이 적절하느냐는 그 유용성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의 경우검사를 받으라는 건 정보 소유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보인 측면은 있음
- o 수집된 정보의 향후 활용과 관련해서 코로나19의 후유증과 기저질환 이력과의 연관성등 연구목적에 활용한다면 보유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동의받은 범위 안에서 활용되면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다만 확진자나 접촉자를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들이 모두에게 공개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결과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됐을 때 비합리적인 추측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난을 받거나 사회적 낙인이 찍히게 됨. 이 경우 신원이 노출되지 않으려 비협조적으로 대응하게 되므로 공중보건 조치에 도움이 되지 않음. 접촉자라도 개인의 신원을 특정하여 공개하지 않는 형태로 자발적 검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식이 적절함.
- o 확진자 및 검사 대상자들이 비협조적이라는 인식이 미디어의 자극적 보도로 인해서 형성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음. 방역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집회, 마스크 미착용 등은 감염병 관련법 위반이지만 검사 결과가 미처 나오기 이전에 단정적으로 비난하는게 적 절한가라는 의문도 있음.

o 인터넷에 공개된 접촉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을 특정하여 접촉자 또는 감염자로 짐 작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면 불만과 두려움을 느끼므로 검사를 받지 않으려 함. 비 자각 감염자가 늘어나면 확진자추적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은 더 증가하게 됨.

질병관리청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들 마다 확진환자의 이동경로의 공개 범위가 비일관적이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신경쓰지 않아 문제된 사례가 있음. 따라서 실무에서 감염병 관련한 개인정보 공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지방자체단체들에게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요청됨.

o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때 수집한 역학정보도 아직 폐기되지 않았다는 NPR의 보도가 있었음. 수집된 데이터 사용 목적과 기한은 감염병 예방 목적에 필요한 동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질병관리청의 판단에 따르게 됨.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기간에는 ICT 기술을 통해 중앙집중형으로 수집된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가 공중보건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 보유기간이 한정되어 있는가,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삭제되는 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세션명	튜토리얼1.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조망					
일시	2020.8.21.(금) 14:40-16:10		<b>장소</b> 온라인 포럼 개최			
참석자	사회 발제		최은창 (펠로우, 프리인터넷프로젝트)			
	패널					

o IT 분야 선진국들에서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펼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적 역량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 또한 AI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과 AI 윤리에 대한 관점도 IT 산업계로 대표되는 사적 영역(private sector)과 정부로 대표되는 공적 영역(public sector)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o 구글·페이스북·아마존·IBM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연구소들은 The Partnership on AI를 통해 사적 영역에서 AI 윤리와 거버넌스의 검토를 2016년에 시작함. 한편 OECD는 2019년에 AI 원칙 권고안(The OECD Principles on AI)을 채택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AI 거버넌스 논의를 개시하였음. 2020년 출범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GPAI(Global Partnership on AI)는 국가간 AI 정책 협의체로서 프랑스와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고 우리 정부도 참여하고 있음. 이제 AI 관련한 정부간 국제기구의 논의는 OECD 에서 GPAI로 옮겨가게 되었음. World Economic Forum 등은 싱크탱크 네트워크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영향력을 갖추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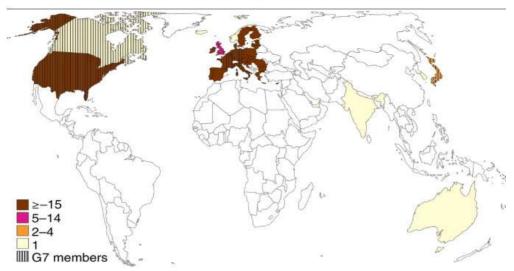
## 논의 세부 내용

o 윤리적 AI를 위한 원칙으로 투명성, 공정성, 설명가능성, 안전성,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거론되고 있음. 그러나 이 원칙들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계방식, 기술 표준, 모범사례(best practices), 안전성 기준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음. 예컨대 AI가 통제불가능한 위험을 야기하거나 살상용 전쟁무기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도 IT 기업들은 AI 오작동이나 기술위험은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논의는 IEEE 표준화위원회, 유엔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의 Best Practice Forum(BPF) of IoT-Big Data-AI에서 진행되고 있음.

o 유럽집행위원회는 2019년 'AI 윤리 가이드라인'(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내놓았고 올해에는 안전성과 신뢰를 강조한 'AI 백서'(On AI: European approach to excellence and trust)를 발표. 유럽연합의 AI 윤리는 머지 않아 법규제로 제정될 예정으로 있으며 앞서나가는 중국과 미국의 선도적 AI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무역 규범으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이미 중국도 AI 윤리와 거버넌스 마련에 나서고 있음.

o AI 기술은 고도화되어 가고 있지만 기술 윤리와 책임을 요구하는 법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음. 유럽연합은 AI 윤리를 구체화하려는 정책방침이지만 미국 백악관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AI 거버넌스를 자율규제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입장.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은 AI의 활용과 보급은 '개발'과 '포섭'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그림 2: 공개 된 문서 수에 따른 윤리적 AI 가이드 라인 발행자의 지리적 분포.



o AI의 범주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정의할지 아니면 '인간처럼 사고하는 자동화 기계'로 정의할지 의견이 분분하여 AI 거버넌스의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음. 현재 구현된 AI는 '합리적으로 행동하는(acting rationally) 기계'로 파악하는게 정확함

o 뉴스 미디어 보도는 '인간처럼 생각(thinking humanly)하는 기계'를 전제하는 기사들이 발간되어 대중의 AI 위험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을 위협하는 수퍼인텔리전스, 범용인공지능(AGI)은 SF영화에 존재하며 구현되지 않았음.

o AI의 자동화된 판단 오류, 편향성의 존재, 연산과정의 불투명성, 설명불가능성의 문제가 AI 윤리의 초점이 되고 있음. 요컨대, 공정성, 투명성, 설명가능성이 AI 윤리에서 가장 요청되는 사항이며 AI로 인한 피해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건임. 다인 종국가 미국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듬으로 고용과정에서 여성 구직자 차별이나, 유색인종의 얼굴을 잘못 인식하는 오류 비율이 높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음. 반면 국내 기업들은 AI를 이용한 비대면 면접방식을 오히려 경비와 시간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o AI 시스템에 의한 오작동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AI가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는 언제나 제조사가 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점의 차이가 존재함.

o 민간 영역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AI의 혜택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AI는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공공선의 증진시키기 위해서 AI가 인간 가치와 조정(aligning)될 필요가 있음.

세션명	[튜토리얼2]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일시	2020.8.21.(금) 00:00~00:00		장소	온라인 포럼 개최				
참석자	사회	강상현(KISA)	발제	강상현(KISA)				
	패널	강상현(KISA)		석원진((주)엔에스컨설팅)				

#### o DNS 개념

- DNS는 1983년에 최초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 중이며, 네트워크 상에서 외우기 어렵고 복잡한 IP주소를 도메인네임에 매핑시키는 방법론
- 도메인 네임공간, 리소스 레코드, 네임서버, 리졸버

#### o DNS 작동원리

- 도메인 질의 절차
- DNS 특징 분산구조형 데이터베이스, 트리 구조의 도메인 네임 체계
- DNS 레코드 DNS에서 응답하는 정보의 종류를 정의 (A, AAAA, MX, NS 등)

#### o 도메인 네임 구성

- 레이블, 이름 유일성, FQDN(Fully Qualified Domain Name)
- 다국어 도메인(IDN), 퓨니코드(Punycode)

#### o DNS 관리

- 네임서버의 구분 권한 DNS와 캐시 DNS, 마스터 네임서버와 슬레이브 네임서버
- DNS 서버의 이중화·다중화 구성

#### - 도메인 위임설정

- 국가도메인 등록정보와 국가DNS 반영 절차

#### o DNS 거버넌스

- 인터넷 생태계와 DNS 생태계
- DNS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 (ICANN, IANA, RSO, TLD 레지스트리 등)
- DNS 거버넌스 동작 사례 (DNS Flag Day)

#### o DNSSEC

- DNSSEC의 등장 배경
- DNS 캐시 포이즈닝 공격
- DNSSEC 동작 원리, 신뢰 체인, 신뢰 앵커

#### o DNS의 변화

- DNS와 프라이버시 DoT/DoH 개요
- DNS 데이터 활용 데이터 원천으로서의 DNS
- 범용적인 DNS 글로벌 분산DB로서의 DNS

# 논의 세부 내용

세션명	KIGA 주소자원분과 공개회의 -						
	도메인 WHOIS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일시	2020	0.8.21.(금) 16:20~17:50 <b>장소</b>		장소	온라인 포럼 개최		
참석자	사회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발제			
	패널	강경란(아주대학교)			박창민(한국인터넷진흥원)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이동만(KIGA 위원장, KAIST)		

첫 번째 안건은 WHOIS 정책이다.

즉, WHOIS 정책은 뭐냐 하면 도메인 등록자가 있을 때 그 도메인 등록자의 정보가 다 'WHOIS'라는, 도메인 등록정보가 공개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된 이후에 도메인 등록인이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의 주소나 이름, 전화번호가 공개되는 게 맞냐, 적정하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서 국제적으로도 말하자면 변동이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인 국제적 변동 하에서 우리나라의 WHOIS 정책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고려하에서 WHOIS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 진행

- 박창민(한국인터넷진흥원) : 도메인 등록정보의 관리정보의 부정합 부분이 있는데 이부분은 등록된 자가 도메인 양도 시 도메인 증명 수단으로 등록인의 전화번호나 우편 번호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음

# 제도상으로 해당 부분을 수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정합이 있고 GDPR 같은 글로벌 트렌드 변화가 있음. 이 부분은 WHOIS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을 현재는, 개인정보의 어떤 중요성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고려해서 현재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는 중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 등록정보에 대한 수집, 공개 항목에 대해서 검토 또는 재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

# 관련해서 KISA의 운영 현황은 도메인 이름 관리 준칙에서 제8조에 신청 부분에 도메인 이름과 신청인 이름, 등록증, 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네임서버 정보를 신청서 제출 시 KISA에서 수집하는 부분

그리고 25조에 공개 부분이 정의되어 있음

이 부분은 KISA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검색서비스, WHOIS 서비스를 통해서 도메인 이름, 등록인 이름, 주소, 관리책임자 이름,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네임서버 정보, 그리고 등록대행자 이름과 등록일, 최근정보 변경일, 사용종료일 등은 WHOIS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음

이 부분은 간략하게 수집하는 부분과 공개하는 부분으로 나뉘게 됨

이와 더불어서 ICANN과 KISA의 공개 현황을 보게 되면 물론 한국에서 KISA에서 수집 하고 공개하는 부분은 ICANN에서 수집하고 공개하는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한 분량적 으로나 이런 부분은 적음

하지만 KISA도 ICANN이 공개하는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는 형태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KISA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

ICANN과 KISA의 비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등록인의 정보에서 KISA는 이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 주소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음 그리고 ICANN에서는 기술책임자의 정보를 받고 수집해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전환을

# 논의 세부 내용

한 상태고, 인터넷진흥원에서는 관리책임자라는 명칭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고 전화번호 는 선택적으로 공개, 그리고 그 외의 이름과 이메일은 공개를 하고 있음

나머지 네임서버 정보나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공개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의 트렌드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았음

관리 준칙에서 수집하는 정보 중 도메인 이름, 신청인, 관리 책임자, 기타에서 네임서 버~사용종료일까지 있음

신청일을 구분해 보면 법인과 개인으로 나뉘는데 도메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공통사항이고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 이름은 법인명이 될 거고 개인은 신청인 이름이 될 거고. 그 외에 등록정보는 법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주소에서부터 나머지 부분은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신청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현재는 이름과 주소 정도만 있기때문에 전화번호나 우편번호를 통해서 인증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그 외에 관리책임자의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은 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보가 법인명이라든지 법인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컨택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와야 되며, 개인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의 신청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 책임자의 정보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네임서버에서 사용 종료일 부분은 ICANN과 동일하게 공개하는 정책으로 보고 있음. 그래서 검토하는 사항은 도메인은 등록 신청 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고 이에 대한 수집 범위를 정하는 부분.

예를 들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록 수집하는 항목이 도메인명, 법인명, 등록정보, 대표 번호와 대표메일은 선택적으로, 관리책임자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하는 형태 개인은 도메인명, 신청인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부분을 고려

두 번째 검토사항은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와 비공개에 대한 범위 부분을 정의해야 함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개되는 정보가 법인명,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공개를 안 하고 그 외 나머지 주소, 대표번호 등 개인을 식별하거나 아니면 공개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비공개하고, 그 외에 도메인 이름과 네임서버, 등록대행자, 등록일, 갱신일, 사용종료일은 공통사항으로 공개하는 부분으로 우선 개선 방안을 고려

그리고 추가적인 고려사항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예를 들면 WHOIS를 통해서 정보를 접근해야 될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그 부분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한 목록, 또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는 방법과 제공기준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라 하면 사법기관이라든지 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록대행자 등이 있음

그 외에는 KISA와 등록대행자 간 통신프로토콜 개선 부분이 있을 거고. 또 WHOIS 서비스에 대한 공개, 비공개에 대한 변경, 관련 준/세칙의 관련 조항 개정이 있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우선 계속 신청인과 등록인을 같이 쓰고 있는데, 사실 같은 신청인이 등록인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게 다른 게 아니라면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향후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법인과 개인을 구별했는데 어떤 부분은 차이점을 두더라도 가능한 일관성을 갖는 것이 나중에 오해의 여지가 적을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어쨌든 등록인인 것.

그러면 등록인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한다고 정하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선택이 되고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와 우편 전자우편 번호를 수집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은 전화번호와 등록인의 우편주소를 수집하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음 법인이든 개인이든 등록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게 하고 그게 실질적인 등록인의 정보가 되는 거고, 관리책임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야말로 오히려 필요에 따라서 입력을 할 수 있는 선택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듦 또 이렇게 하는 게 글로벌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느냐는 생각됨

지금 법인과 개인을 구분했는데, 거기에서 법인이 정말 법인만으로 제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단법인은 아님. 법인은 아닌데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회사명이 있는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이런 게 존재.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도메인이 개인에 속한 게 아니라 조직에 속한 것일 수 있는 것으로, 단체. 그런데 그 단체는 등록된 법인일 수 있고 법적인 차원에서는 그러한 법인의 효과가 없는 단체들도 있음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법인으로만 제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체명으로 도메인을 등록한 것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것이 법인명이 아니라 단체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더 적합한 게 아닌지.

그래서 이게 그냥 법적 효과만 바라본다면 개인이냐, 아니면 법인이냐의 부분이 중요할수 있는데 어떤 도메인이 개인에게 속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조직에 속한 것이냐는 측면을 바라본다면 법인에만 국한하지 않고 법인이 아니더라도 단체나 조직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듦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특정한 의견을 갖고 있다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떤 고려가 있었는지 먼저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논의가 필요함

- 윤복남(법무법인(유) 한결): 정비를 할 때 신청인이라는 말이 큰 의미는 없음 무슨 의미냐 하면 도메인 등록이 되기 전 단계에서 등록하려고 신청하는 사람, 즉 등록자의 말하자면 태아단계, 등록자의 바로 전 단계에 불과한 시기적 개념에 불과함.
- 그러기 때문에 그냥 등록인을 메인 개념으로 하되 그 등록인이 등록 전 단계에서 신청하는 과정이 있다고 덧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신청인과 등록인이 대등한 개념인 것처럼, 또는 별개의 개념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정비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음 등록인을 아예 메인 개념으로 보자는 것임
- 강경란(아주대학교): KISA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서 그렇지 수집은 신청인임 신청인이 신청할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거냐.

당연히 그것은 신청인이니까 그런 거고 공개는 등록인이므로 등록과 신청을 동시에 다루다 보니까 신청인과 등록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분리하면 전혀 헷갈릴 수 없을 것 같음

- 이동만(KAIST): Tech, 이게 사실 예전에 인터넷이 사이즈가 작았을 때의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으로 이해가 됨,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도메인 등록자들이 내부의 기술관리자를 거의 두지를 않으며, 요즘 시스템 자체도 다 용역을 둬서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책임자가 있기가 힘든 상황

그러면 여기에 도메인 에이전트나 클라우드가 되는데 회사에서 관리책임자라고 하면

관리를 다 맡겨 버리는데 ICANN도 그것을 옵션으로 둔 것 같음 왜냐하면 과거에 이런 백업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옵션으로 두면 대부분 안 쓸 것으로 생각됨

두 번째 안건은 or.kr 이슈

2단계 도메인에서 말하자면 or, co 부분이 개방되어서 굳이 2단계를 안 써도 되지만 기존의 co.kr, or.kr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조직을, 또는 비영리단체를 의미했던 or.kr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 적절한지에 대한 안건

#### 이 주제를 중심으로 토의 진행

- 박창민(한국인터넷진흥원) : 현재 영리기업이나 개인이 비영리 자격도메인 or.kr을 사전 승인 없이 등록이 가능, 그렇기에 자격 부적격 신고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것은 KISA측 판단으로 원하는 도메인 이름을 선정하지 못해서 비영리 도메인이 선호도가 높기때문에 이런 부분을 영리의 목적임에도 비영리 도메인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있음

도메인 관리 준칙에 따르면 3단계 kr 도메인의 등록 자격에는 or.kr는 비영리고 등록자격은 법인과 개인이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현황을 보면 현재 보험이라든지 교육, 서비스,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도메인 사용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2020년 6월 현재까지 한 153건 정도가 접수가 되어서 처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처리하면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 보면 비영리 등록기준에 부합한 or.kr이 사전 승인 없이 절차가 없이 허용된다는 문제가 있고, 부적합 사용 신고로 접수가

or.kr이 사진 증인 없이 설사가 없이 어용된다는 문제가 있고, 무직합 사용 진고로 접구가 되더라도 콘텐츠만으로, 홈페이지의 콘텐츠만으로 영리나 비영리의 구분, 또는 사실

확인이 모호하고. 어떤 때는 사실상 불가한 경우가 발생을 함

일례로 영리 사이트를 링크한다든지 아니면 거래하고 있는 계좌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숨겨져 있어서 실제로 거래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든가 또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연결해서 쓰는 부분들. 또는 영리기업이 개인자격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음.

이에 따라서 KISA에서 고려해 본 개선방안으로는 첫 번째는 비영리 등록자격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부분이며, 1안을 선택하게 되면 개인은 등록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며 법인의 등록자격은 비영리라는 해당 영역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고유번호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공익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가능

두 번째 안으로는 비영리의 등록자격을 영리나 비영리 모두 개방하는 부분

이 부분은 현행에서 해당 영역의 부분을 영리나 비영리가 모두 가능하게끔 개방하게 되며 우려사항으로는 or.kr 도메인에 대한 신뢰도, 비영리나 공공성이라는 그 인식 부분의 하락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음

세 번째 안으로는 비영리 등록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으로 권고하는 것

현재는 강제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권고로 해서 실제로 비영리나 비영리로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유도시키는 방법을 고려함

해외 쪽의 사례를 보면 gTLD는 자격 제한이 없고 인도나 방글라데시도 자격 제한이 없지만, 일본이나 호주, 영국 등은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법인, 또는 공공기관 등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었음

다만 이런 국가들은 별도의 개인이 등록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음

- 이동만(KAIST): 어느 순간에 준칙에 개인이 들어갔는지 이해를 못 하겠음. 우리가 'or'이라는 제일 첫 번째 것은 지난 회의에도 말씀드렸지만 or이라는 부분을 1안, 2안, 3안으로 두기보다는 먼저 or 부분들에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기존에 왔던 위치를 유지할 것이냐, 그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고 보며 그러면 이제 영리, 비영리 모두 개방하는 이슈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다음 안으로 법인, 원래 or의 초기 단계 의미인 법인으로, 그러니까 단체로 바꾸되 개인으로 되어도 단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서 단체를 위한, 비영리 단체를 위한, 우리 아까 WHOIS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 대신에 법인이라는 말대신에 단체로 바꿔 나가는, 그렇게 두 단계를 바꿔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여기에서의 법인 또는 개인은 이게 단체가 아닌 의미에서의 개인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co는 아마 영리라고 되어 있고 법인 또는 개인으로되어 있을 것 같음 자격이 법인 아니면 개인이 등록해야 되니까, 신청해야 되니까 그런의미에서 이렇게 쓴 거고. 지금 or이냐 co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영리냐, 비영리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으며. 그랬을 때 비영리라고 했을 때 그러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비영리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의 부분인 것 같음

그런데 비영리, 누가 어떤 그게 개인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비영리임을 입증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음. 뭐가 영리적이냐는 것에 따라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일단 법인이냐, 개인이냐를 떠나서 뭐가 비영리냐는 것을 등록 자격증으로 구분하기에 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임

그러면, 그래서 굳이 의견을 묻는다면 3안에 해당할 텐데, 그것은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 할 뿐이지, 사전/사후적으로 제3자가 이건 "돼, 안 돼."라고 절대적인 선을 긋기에는 힘들지 않겠냐는 의견임

이번에 org 도메인의 국제적으로 이슈가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유는 org가 실제로 그 영리적 목적으로도, 혹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org의 어떤 정체성을 비영리 단체가 가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임

or.kr이든 org든 이런 것은 비영리 목적이라는 인식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라는 게 사전에 도메인을 엄격하게 규제해서, 물론 일부 도메인은 go라든가 엄 격하게 규제하는 것도 있지만 co, org, or.kr은 느슨하게 방향성만 정해 놓는 거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는 도메인이다 하는 인식이 둘 다 있다고 생각함

실제 org도 아무나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으로도, 그래서 영리적 목적으로 도 추정 가능한 거죠, 비영리 목적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10%가 존재하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느슨하게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의 문제라고 봄

# 5. 행사 평가

# 1) 참석자 통계

- o 참석인원 : 총 188명(줌 참석자 119명(63%), 유튜브 시청 69명(37%))
  - \* 줌 참석자에는 패널도 포함 되어 있음(약 50명)

## 2) 각 세션별 보고서 요약본

### 세션명

# 워크샵1. 과학적 연구에서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안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두 가지 큰 변화: 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실질적인 통합감독기구가 됨 ②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상업적 또는 산업적 목적의 연구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는 연구는 과학적 연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에서 쟁점 1은 더는 논란거리가 아니다.
- 가명처리는 안전조치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도입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 입법상 아쉬운 점이 존재한다.
- 과학적 연구에 영리 목적의 연구가 포함된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러한 연구를 위해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 가명처리는 개인 식별화를 막는 조치이기에 누구에 대한 정보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정보주체에게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
- 결합기관 자체가 필요하며 이는 전문기관이어야 하는데 내부적 통제보다는 당연히 외부적 통제가 낫기 때문이다.

# 논의 요약 내용

- 개정 전에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행된 사례를 통해 야기된 문제가 있었는데 개정법 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었는지 조금 의문스럽다.
- 결합기관, 전문기관 자체가 국가에서 정보결합을 감독하기보다는 장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부자연스러우며 반출 관련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 처리에 필요한 동의를 받았을 텐데 이를 다시 재식별화하려는 사업자가 있다고 하기에는 동기가 부족하며, 반출 관련해서 사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키지 않는 경우 받을 처벌이 강하므로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보주체의 참여가 명시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반출 심사기준 통과 이후의 통제 절차에 관해 규정이 없는 등 법에서 놓치고 있는 사안을 고시에서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 가명처리에 대한 안전조치로써의 맥락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고시나 설명으로 이를 강화해야 하며, 투명성 부분도 보완되어야 한다.
- 식별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향후 고민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단계 내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들이 잘 보장되어야 한다.
- 향후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논의할 때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항목을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도 같이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 세션명

# 워크샵2. 포스트 코로나19와 정보통치성 시대, 그린뉴딜 스마트시티의 데이터와 플랫폼 공공성

정보상품화는 거시적 맥락에서 통치체제의 변화로서 이해되어야 함.

데이터와 인터넷의 밴드와이드의 다양한 수량적 변환이 사회에서 개인삶으로 치환되는 것을 통치성의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음.

이 통치성 변화의 한 사례로서 '스마트시티'를 접근할 수 있음.

# 논의

특히 2020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이에 따른 데이터 이용 및 프라이버시권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음.

# 요약 내용

이런 면에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포스트-코로나19 정책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신자유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음.

스마트 시티 정책은 민간참여를 강조하지만, '리빙랩'의 많은 서구 사례 연구에서도 입증되듯이, 리빙랩을 통한 스마트 시티가 지방자치와 지역문화/지식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음. 현재의 거대 기업주의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은 거대 자본의 힘을 강화하고 산업과 행정의 중앙집권화 및 감시체제의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세션명 워크샵3. 인터넷거버넌스의 여성기술자 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

### 논의

-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 기술자 성비가 낮은 현 상황

- 여성의 기술적 장벽 문제

#### 요약

내용

- 이를 위한 해결 방안 : 초중고 파이프라인을 고려해 청소년기부터 기술적 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함, 커뮤니티의 필요성, 거버넌스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사회문화적인 분위기 형성, 제도적 장치

#### 세션명

### 워크샵4. 인터넷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정의로운 공간인가?

- 1. 현재 우리가 마주한 혐오와 배제의 현실은 어떠한가?
  - 트랜스젠더, 성노동자, 여성청소년의 성에 대한 담론은 제대로 인식되기도 전에 비가 시화되거나 부정되는 지경에 이르렀음. 특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이버불링'같은 현상 이 심화되고 피해자가 해당 공간에서 떠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임. 여성청소년 의 경우에도 단순히 청소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고 제대로 된 대화나 토론이 이뤄지 지 않는 다는 문제점이 있음.

### 논의

# 요약 내용

- 2.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이란 무엇인가?
  - 혐오, 배제, 차별이 없는 안전은 없음. 하지만 사이버불링의 피해자가 해당 공간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 가해자가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사안을 단순화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주변화된 목소리들이 더욱 많이 들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3. 혐오와 배제를 넘어 '안전'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 우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성소수자, 성노동자, 여성청소년을 규제와 혐오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 모순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단순히 혐 오표현의 규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회 전체적 맥락에 서 무엇이 당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지 이야기 나눌 공론장의 구성이 필요하다.

세션명

# 워크샵5.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망사용료 및 망중립성 정책은 무엇인가

해외CP와 국내CP가 지불하는 망사용료의 차이에 대해서는, '역차별'의 상황이 결과적으로 는 나타나고 있지만,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패널 전원의 공통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해외CP들은 콘텐츠 부문에서 강한 협상력을 지니고 있어 국내 망사업자들이 이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의견, 현실적으로 국내CP들이 과중한 망사용료를 일방적으로 납부하지만 이를 해외CP들에게도 동일한 요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인터넷의 연결 구조상 요금의 양을 두고 차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의견, 캐시서버 없이 원활한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ISP와 해외CP들이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논의 요약 내용 국내 통신망 접속료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유럽, 미국에 비해 싸고 아시아에 비해 비싼 상황에서 인터넷 여건이 안 좋은 아시아에 비해 가격이 싼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선진국들 과의 비교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 전반적으로 접속료가 비싼 것도 문제인데, 이 접속료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접속료의 투명성을 보장해야한다는 의견,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인한 발신자 종량제가 높은 접속료의 원인이라는 의견, 입법계 측에서는 접속료 투명성을 보장할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호접속고시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내CP들의 과중한 망사용료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고 CP들의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일괄적인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 스타트업들에게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큰 악영향을 주었다는 의견, 상호접속고시 보다는 '발신자 종량제'가 문제이며 이것이 ISP들이 킬러 콘텐츠를 제공하는 CP들을 기피하는 원인이라는 의견, 발신자 종량제가 대형CP유인의 방해물이 되지만, ISP간 독점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 상호접속고시인 만큼 전반적인 경쟁 현황을 살핀 후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G 환경에서의 망중립성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과 원격의료 등의 5G 기반 서비스들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슬라이 싱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제공되는 데이터들이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구한다는 보장이 없고, 일반 인터넷 회선이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망중립성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세션명

# 워크샵6. 감염병 확진자 정보공개의 명(明)과 암(暗) - COVID19 사태의 정보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

요약

내용

1번 쟁점

- 확진자 대상 사이버 불링, 신상 털기, 악플 등이 문제 되고 있음
- 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가 역학조사관의 자의에 의존함
- 질본중심의 데이터 공개와 정보공개를 감독하는 기구가 필요함
- 성 소수자 인권 등 2차적 피해에 대한 고민 없는 정보공개가 문제 2번 쟁점
- 정보공개라는 기본권 침해에 있어 사회가 무감각하고, 행정 명령 등에 의존하는 등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정보공개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비례성의 원칙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 특히 공익과 사익의 비교에 있어서 공익 쪽에 초점이 있는 듯함)
- 확진자 정보 전면 삭제는 인터넷상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적게 수집하고 적게 공개 해야 함

#### 3번 쟁점

- 정보공개가 된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인권 보호조치는 나오기 어려우므로, 애도와 위로 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최선일 듯함
- 정보 삭제를 하는 인터넷 방역단 등이 있지만 많이 더딘 편임
- 정보 파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법문상 성문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적 대처뿐만이 아닌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질문 및 정리
- Q. 정보 공개식 방역은 정부 능력 차이인가 공익과 사익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인가? A. 기본권과 방역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일 뿐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다
- 방역과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친인권적인 방역시스템 이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세션명

#### 워크샵7.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바란다

(쟁점1) 8월 5일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우선 순위를 두고 가장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

(쟁점2) 업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의 활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 논의 요약 내용

(쟁점3)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정부의 데이터 정책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쟁점4)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 원칙은 어떠해야 하는가. 특히 중요한 원칙은 무엇일까.

(쟁점5) 세계적인 개인정보 규범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떻게 참여해야할까.

#### 세션명 워크샵8. COVID 19 이후의 뉴노멀, 언택트 문화 속의 사회적 소외계층

#### ·기조발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사회가 강조되면서 언택트 문화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격차에 대한 정의도 물리적인 접근성에서 정보활용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재정의 되고 있고 2019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 농어민 네 취약계층 모두 물리적인 접근성은 높았지만 인터넷 비자발적 비이용 이유로 가장 큰 원인이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이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정부와 사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 논의 요약

내용

·쟁점 1. 언택트 문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정보의 가속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 장애인에게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 지원이 필요하다
-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 설계단계에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활용하여 혜택을 보는 사례도 존재한다.
- 정부의 억지 규제가 아닌 기업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쟁점 2.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포용정책에 대해 부족하거나 추가할 부분이 있는가?
- 디지털 포용정책의 과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개별 디지털 활용 역량이 부족한 분들에 대한 교육진행, 취약계층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접근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접근성 보장관점,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개발확산 및 기업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국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활동을 만드는 것 이다.
- 정부규제의 최소화에 동의하지만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한 부분엔 실행될 필요가 있다.
- 모든 이들이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초점을 두고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 세션명

#### [워크샵 9]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 공중보건과 개인정보의 균형은?

# 논의 요약 내용

팬데믹의 시대를 맞아 K 방역은 확진자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등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효과적인 공중보건 조치가 요청되지만 개인정보가 감염병 예방과 접촉자 파악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필요이상으로 노출되면 사회적 낙인찍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접촉자(잠재적감염자)들이 숨게 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되므로 사회 안전과 효과적 방역에는 걸림돌이 됨. 우리나라가 감염병예방법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고 있는데 국민의 공중보건을 위한 방역조치와 개인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도모하는 실무를 구축하여야만 K 방역의 성과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 세션명

#### 튜토리얼1.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글로벌 조망

# 논의

요약

내용

윤리적 AI의 구현은 원칙 자체가 아닌 기술표준, 설계 원칙 등이 필요하며 설계자, 제조사, 이용자의 합의와 실천을 요구한다. AI는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사회적 비용과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다수가 AI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AI 윤리에 대해 더 많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세션명

#### 튜토리얼2. DNS의 현재 그리고 미래

#### o DNS의 기초

- DNS 개념
- DNS 작동원리
- 도메인 네임 구성
- DNS 관리

# 논의 요약

내용

o DNS 거버넌스

- o DNS 기술동향
- DNSSEC
- DNS와 프라이버시
- DNS 데이터 활용
- 범용적인 DNS

#### 세션명

# KIGA 주소자원분과 공개회의 -도메인 WHOIS 정책 : 개인정보 보호법 아래에서 어떻게 할까?

쟁점 1. WHOIS 정책: 인터넷 도메인이름의 등록자 및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WHOIS 데이터베이스가 세계적으로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를 계기로 변경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WHOIS 정보공개 정책을 어떻게 변경할지를 의논하는 주제이다. 예를 들어 법인 등록자 명의를 공개할지, 개인과 마찬가지로 비공개할지, 기술책임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할지, 비공개정보는 어떤 절차로 공개할지 등이 현재 논의되는 쟁점

-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고 법인명만 공개하고 나머지 연락처와 담당자 정보 비공개
- 개인의 경우 등록인 이름 비공개, 단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에게 공개

# 요약 내용

논의

쟁점 2. or.kr 도메인 정책 : 현행 or.kr은 비영리 등록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도 등록을 하여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검토가필요하다. 아예 전면개방을 할지, 반대로 엄격하게 등록기준을 운용할지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음

- or을 공공 도메인으로서의 기존에 왔던 위치를 유지할 것인지?
- 현실성을 생각해서 or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만들 것인지?

### 3) 프로그램위원회 평가 내용

- o 2020 KrIGF 평가(참석자 통계, 참석자 의견 등)
  - 참석자 통계
- ▶ 참석인원 : 총 188명(줌 참석자 119명(63%), 유튜브 시청 69명(37%)) ※ 줌 참석자에는 패널도 포함 되어 있음(약 50명)
- 설문조사 결과 주요내용 공유
  - ▶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집중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집중이 잘 되었음
- ▶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했었음
-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자체 평가
- ▶ 참석자 수가 20~30명정도 규모라면 음소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음
- ▶ 패널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청중들을 조금 덜 신경 쓰고의견을 편하게 교환하며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음
- ▶ 향후 트랙별로 진행을 하지 않고 방을 미리 준비하여 시간 제약 없이 진행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음
- ▶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 끝난 후 패널들이 라운지에 모여서 이번 워크숍에 대해 어땠는지 평가 등이 가능했는데 온라인이라 어려웠던 점이 조금 아쉬웠음
- ▶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별문제가 진행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 참여도가 부족하였음
- ▶ 내년부터라도 소규모라도 역할을 나눠서 KrIGF를 진행하였으면 함
- ▶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으면 청중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 함

- ▶ 패널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외부 패널 섭외 및 워크숍 제안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음
- ▶ 패널 섭외 과정에서 KrIGF 위원회 및 KIGA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현저히 적었었음
- ► 프로그램위원회 모집 시 운영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방법이 필요함

#### o 2020 KrIGF 자체 평가

- 참석자 수가 20~30명정도 규모라면 음소거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음
- 패널들끼리 대화를 하는 것 같아서 청중들을 조금 덜 신경 쓰고 의견을 편하게 교환하며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음
-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워크숍이 끝난 후 패널들이 라운지에 모여서 이번 워크숍에 대해 어땠는지 평가 등이 가능했는데 온라인이라 어려웠던 점이 조금 아쉬웠음
- 관심이 있는 주제가 있으면 청중들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 함
- 패널 섭외 과정에서 KrIGF 위원회 및 KIGA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현저히 적었었음

### o 2020 KrIGF 개선 방안

- 내년부터라도 소규모라도 역할을 나눠서 KrIGF를 진행하였으면 함
- 프로그램위원회 모집 시 운영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프로그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방법이 필요함
- KIGA 분과 내의 이슈를 확장하여 활동하여 결과물을 KrIGF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함

# 6. 결산

항목	세부항목	수량	단가(원)	예산(원)	비고
행사장 임대료	세미나실	6실	-	2,851,000	사전점검회의 포함
인건비	줌 중계운영	1식	-	6,000,000	사전테스트 (2일), 유튜브중계 포함
[ 건간미	서포터즈 지원비	20명	100,000	2,109,000	
	영문 번역비	1식	-	1,000,000	
장비임차	줌 사용료등	1식	-	1,207,050	
6미급시	노트북 대여	25개	100,000	2,500,000	
중식 및 다과등	참가자 중식/다과,음료등	1식	-	1,276,450	
문자통역	세션별 문자통역비	1식	-	1,563,000	
기념품	헤드셋/모바일쿠폰등	1식	-	2,756,000	
주차권	주차권	1식	-	367,530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홍보/ 포스터 등	1식	-	3,350,000	
사무용품	인쇄,프린터,문구류 등	1식	-	1,042,500	
예비비	마스크,손소독제, 체온계,콜밴등	1식	-	863,700	
총			26,886,230		

※ 후원 현황: 가비아(100만원), 카카오(250만원) 등 350만원

# 7. 사진

